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02
----------	------

발의연월일 : 2017. 9. 26.

발의자 : 김한표 · 김성태 · 장석춘  
여상규 · 김정재 · 박명재  
배덕광 · 원유철 · 윤재옥  
정병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신탁업자가 인수한 담보부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한 무보증사채와 달리 별도로 공고의무를 거치게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또한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부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5호 신설 등).

##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채를”을 “사채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을 “제22조제4항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②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p>	<p>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p> <p>6.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p> <p><u>&lt;삭 제&gt;</u></p>
<p>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① <u>신탁업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u> <u>인수한 사채를 양도하려는</u> <u>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의 공고에 적을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u></p> <p>③ (생 략)</p> <p>④ <u>신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채를</u></p>	<p>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사채를----- -----</p>

양도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 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 ----- -----.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 는 제20조제2항, <u>제22조제1항·</u> <u>제2항 및 제4항을</u> 준용한다.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①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